

梁憲洙著「訓民篇」研究

梁 重 海

I

「耽羅紀年」에 보면 西紀1864年 高宗元年 甲子에 濟州牧使 梁 憲洙가 「訓民篇」을 著述하여 濟州島民을 教化하였다는 記錄이 보인다.¹⁾

筆者는 일찍부터 그 「訓民篇」에 對한 關心을 가지고 濟州島 關係 文獻을 더듬는 機會마다 이것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次에 1970年 慶北 榮州郡 豊基邑 金鷄洞에 居住하는 梁 元彬이 所藏하고 있는 「荷居集」²⁾에서 漢文體로 되어 있는 「訓民篇」을 發見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資料의 內容을 檢討하는 過程에서 本是 「訓民篇」은 國文體와 漢文體인 두文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도 계속 國文體의 「訓民篇」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75年에 濟州民俗博物館 所藏의 資料를 더듬다가 筆寫本 「訓民篇」을 發見해 내었다. 거기에는 꼭 같은 內容이 漢文體와 國文體로 記述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 오랜 宿願이던 「訓民篇」은 完全히 發見된 것이다.

「訓民篇」은 濟州牧使 梁 憲洙가 濟州島民을 教化하기 爲하여 著述한 島民의 生活指針書라고 할 수 있다.

島民 大衆이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하는 目的에서 지어진 글이기 때문에 漢文體와 國文體인 두 文體로 되어 있고, 漢文體에도 讀解에 便利하도록 하나 하나 口訣(吐)을 달아 놓았다.

이래서 이 「訓民篇」은 國語國文學의 資料로서의 價値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

「訓民篇」은 島民을 教化하기 爲하여 著述된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島民의 短點과 弊習

1) 金 錫翼, 耽羅紀年, 1918, (濟州道教育研究院編, 耽羅大獻集, 1976, 以下「耽羅文獻集」으로 略稱함) p, 114

2) 梁憲洙, 荷居集 卷之一, 1888

梁憲洙文集인 荷居集에는 「訓民篇」을 비롯한 濟州島 關係 記錄이 많이 收錄되어 있다.

이 무엇인가를 率直히 指摘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資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濟州島民의 生活風俗의 一面을 밝혀 주는 社會學的인 重要한 資料的 價値도 있을 것임을 알았다.

여기에는 島民生活의 困窮한 狀態도 잘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濟州島의 地方行政責任者인 牧使 梁 憲洙가 行政의 要諦는 教化에 있다고 確信하고 먼저 島民들이 相勸하며 實踐하여야 할 道德生活를 強調하였고, 다음에는 바로 是正하여야 할 弊習을 指摘, 이를 嚴禁함과 동시에, 官民一體가 되어 이 「訓民篇」의 內容을 지켜 나가도록 한 行政的 處理는 行政學的인 研究資料가 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積弊를 一掃하고 島民生活의 健全化를 促進시키고자 하는 一種의 新生活運動, 나아가서는 오늘의 새마을 運動과도 相通하는 精神啓發運動의 教範인 것이요, 對象範圍는 비록 濟州島民에 限定된 것이라 하더라도 內容과 精神만은 日本에서 그들이 國民教育의 典範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教育勅語」가 發布되기 36年前에 이미 그 비슷한 「訓民篇」이 發表된 것이요, 이는 오늘의 「國民教育憲章」의 뜻과도 相通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本稿에서는 먼저 이 「訓民篇」에 對한 解題와 作者에 對한 行蹟을 살피고, 이어 「訓民篇」의 內容을 分析 考察한 다음 「訓民篇」의 資料的 價値를 밝히고자 한다.

本稿를 草함에 있어, 그 資料가 되는 「訓民篇」 原本을 提供하여준 慶北의 梁 元彬씨와 濟州民俗博物館 秦 聖麒 館長의 好意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II

2.1. 「耽羅紀年」에 「甲子 太上元年 淸 同治三年 牧使 梁 憲洙 著訓民篇 以教民³⁾」이란 記錄이 있다.

곧, 高宗元年 甲子인 1864년에 濟州牧使 梁 憲洙가 「訓民篇」을 著述하여 濟州島民을 教化하였다는 것이다.

本稿를 草함에 있어서의 資料로서의 「訓民篇」 原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梁 憲洙 文集인 「荷居集」에 收錄되고 있는 木版本 漢文體 「訓民篇」인 것이요, 하나는 濟州民俗博物館 資料室에서 發見된 筆寫本 「訓民篇」인 것이다.

後者인 筆寫本은 漢文體와 國文體 두 書體로 되어있고, 漢文體에도 前者 木版本과는 달리 讀解에 便利하도록 口訣(吐)을 달고 있다. 「訓民篇」의 內容을 보면 本是 「訓民篇」은 眞諺兩體로 되어 있다 하였으니⁴⁾ 後者인 筆寫本을 基準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木版本은 「荷居集」 속에 끼어 있는 것이지만 筆寫本은 單行本으로 되어있다.

3) 金 錫翼, op cit., p. 114

4) 梁 憲洙, 「訓民篇」에 「眞諺後錄 播諸各里」라고 되어 있다.

表紙에는 「訓民篇」이란 標題가 있는 外에, 「甲子 八月 日」이란 著述 年月日이 記錄되어 있다.

著者の 이름은 直혀있지 않으나 牧使의 官職을 알리는 「使」字가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오늘의 싸인에 해당하는 手決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筆寫本이야말로 梁 憲洙 親筆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親筆을 그대로 模寫한 것이거나, 둘 가운데의 그 하나임을 알 수 있다.

體裁는 橫이 29.5cm, 縱이 30.0cm, 거의 正方形 모양의 책이며, 漢文體와 國文體, 前後 2篇으로 되고 있다.

總 7張 14面으로 되어 있는데, 漢文體가 3張 6面, 國文體가 4張 8面으로 되어 있다.

前篇인 漢文體는 每面 14行, 每行 19~20字이며, 後篇인 國文體는 每面 15行 每行 20~22字로 되어 있다.

標題를 「訓民篇」이라 하였음은 「濟州島民을 訓教하는 글」이란 뜻임은 內容으로 보아 알 수 있다.

「訓民篇」의 著作動機는 著者가 濟州牧使로 赴任하고 보니, 島民의 生活이 매우 가난하고 불쌍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의 弊習도 있음을 發見하고는, 이 弊習을 一掃하고 全島民이 사람다운 生活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島民全體가 가르치고 배워야 함은 勿論, 官의 行政에 있어서도 教化爲先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島民의 教化에는 뚜렷한 方向을 設定한 教範이 필요하였으니, 이러한 要求에서 著述된 것이 「訓民篇」인 것이다.

島民의 生活 教範인 이 「訓民篇」의 實踐에 있어서는 먼저 士林長老나 尊位 頭民이 率先하여 朝夕 餘暇 있는대로 里內의 子弟 婦女를 모아 이를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과 이를 어겼을 때의 對策까지도 상세히 言及하고 있다.

字字 句句 忠君 愛民의 衷情이 담기고 있는 文章임을 알 수 있다.

2.2.1. 訓民篇의 著者 梁 憲洙는 1816年(純祖12年)에 태어나고, 1888年(高宗25年)에 세상을 떠났다. 李朝 末期의 武將으로 字는 敬甫, 副司正 鍾任의 아들이다.

華西 李 恒老의 弟子이며, 1838年(高宗4年) 武科에 及第, 宣傳官이 되고, 哲宗朝에 들어서 參上으로 昇進, 이 때 부터 內外職을 歷任하여 모두 治績을 올렸다.

1866年「丙寅洋擾」때는 江華島 鼎尼山城을 지켜 功을 세웠으므로 漢城府 左尹으로 特進, 이어 副總管, 禁衛總戒, 鎮撫, 御營등의 中軍을 거쳐 左承旨, 그 뒤 黃海兵使로 갔다가 돌아와 同知 義禁府事, 御營大將, 다음으로 刑曹判書, 禁衛大將, 마지막으로 工曹判書를 지냈다.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걱정하다가 죽었다.⁹⁾

5) 金 弘植, 國史大事典, 卷三, 百萬社, 서울, 1972, p. 903

4 논문집

梁憲洙의 經歷에 對해서는 그의 自筆로 남겨 놓은 「從政錄」에 보다 詳細히 밝혀져 있으니 다음과 같다.

- 憲宗朝 戊申 五月 增廣武科 己酉唱榜
己酉 四月 宣傳官
- 哲宗朝 辛亥 六月 陞六品同日宣傳官
訓練院判官
- 壬子十二月 都摠府經歷
- 癸丑 三月 式年覆試參試官
六月 宣傳官
七月 訓練院僉正
- 甲寅 五月 熙川郡守
九月 丁大夫人憂
- 戊午 三月 御營哨官 同月陞通政
五月 宣傳官
八月 內禁衛將 特賞典 中旬試射
- 己未 八月 宣傳官同日蒙承 傳
十二月 甲山府使
- 壬戌十二月 御營廳左都千摠
- 癸亥 八月 御營廳左都千摠
十月 又除
- 當寧朝 甲子 二月 濟州牧使兼防禦使
- 丙寅 六月 承政院同副承旨
九月 舟橋都廳 訓練都監左別將 初九日 巡撫千摠 以先鋒領軍出征洋舶于江華府
十月 初四日 特陞嘉善大夫 漢城府右尹 營造堂上 漢城府左尹 摠戒廳中軍 副摠管 鎮撫
營中軍
- 丁卯十二月 副摠管
- 戊辰 正月 御營中軍
四月 左承旨
九月 禁衛營中軍
十月 副摠管
- 己巳 四月 左承旨同日司穉院副提調
八月 御營中軍
十一月 副摠管

十二月 黃海道兵馬節度使 壬申加特一瓜
 癸酉 正月 同知義禁府事
 三月 副承旨
 四月 又除
 六月 十一日御營大將同日陞資憲大夫 知三軍府事 議政府堂上
 七月 知訓練院事
 八月 上試官 庭試
 十一月 左捕將
 甲戌 七月 左捕將
 八月 知義禁府事
 乙亥 正月 知訓練院事
 二月 刑曹判書 禁衛大將
 丙子 三月 上試官 別試會試時 同月 上試官重試
 己卯 二月 知中樞府事
 四月 都摠府都摠管
 庚辰十二月 左捕將
 壬午 六月 知三軍府事
 甲申 正月 知訓練院事
 十二月 工曹判書
 乙酉 正月 陞正憲大夫 以細帥臣父年七十例陞
 丁亥十一月 知訓練院事
 十二月 春川府留守兼督鍊使
 戊子 正月 大護軍
 自癸酉至癸未別雲劔蒙點十四次

以上은 梁 憲洙 自撰 「從政錄」의 記錄이다. 곧, 이는 憲宗朝 戊甲 五月 그가 增廣武科에 及第한 때로부터 戊子 正月 大護軍에 이르기까지의 經歷인바, 그는 大護軍에 이른 戊子年 11月 22日에 享年 73을 一期로 卒한 것이다.⁶⁾

여기 보인 바와 같이 그가 歷任한 內外職이 順坦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治績을 올리고 있다. 特히 濟州牧使를 마치고 承政院 副承旨로 갔다가 곧 밀어 닥친 國亂 洋擾를 마지하여 巡撫營千摠으로 先鋒 出征, 洋賊을 무찔러 大功을 세운 다음부터는 더욱 重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梁 憲洙, 荷居集, 卷之三, 「正憲大夫 工曹判書兼知義禁府三軍府訓練院事 五衛都摠府都摠管 梁公 謚狀」에 依함

그는 13歲에 巨儒 華西 李 恒老의 門人이 되었으나 집이 가난하고 父母가 늙었으므로 出世가 빠른 武科를 擇하여 山寺에 나아가 武藝를 익혔던 것이다. 山寺를 往來하면서도 大學 中庸 등 學問을 익히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⁷⁾

그는 武科로 立身出世하였으나 文科로서도 크게 認定을 받았던 것이니 그가 卒하였을 때 世上 사람들은 한결같이 儒將이 돌아갔음을 哀惜히 여겼다고 한다.⁸⁾

「訓民篇」의 著者 梁 憲洙의 行蹟을 濟州牧使 在任時와 濟州牧使 遞去後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2.2. 梁 憲洙가 濟州牧使로 在任했던 時期에 關係서는 金 斗奉編 「耽羅誌」에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梁 憲洙 甲子 三月到…明白公平 民懷其德…丙寅八月 拜承旨⁹⁾

淡水契編 「耽羅誌」에도 같은 內容이 보인다.

高宗元年 甲子三月에 到任하고 越二年 丙寅八月에 承旨에 移拜去하다. 訓民篇을 著하여 教民하다. …去時에 士女가…如別父母라 民이 懷之하여 立碑하다.¹⁰⁾

위 두 記錄을 보면 梁 憲洙 牧使는 高宗元年인 1864年 3月에 到任하고 二年 後인 1866年 8月에 遞去하였다 하였으니 濟州牧使 在任期間은 2年 6個月이 되는 것이다.

이 濟州牧使의 在任期間은 「從政錄」에도 밝혀져 있으니

當宇朝 甲子 二月 濟州牧使兼防禦使
丙寅 六月 承政院同副承旨

곧, 그의 在任期間이 「從政錄」에 있어서는 1864年 2月부터 1866年 6月까지 2年 5個月이 된다. 「從政錄」의 2月과 6月이 地誌에는 3月과 8月로 되어있는 것은 着任과 離任의 實際의 離着 日字를 그대로 記錄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牧使의 着任과 離任時의 往來 航海가 容易한 것이 아니었음은 그의 遞去時의 記錄으로도 能히 알 수 있으니

7) Loc. cit.

8) 南原梁氏世譜, 卷之一, 「阡巷士民 無不翫咨嘆惜成曰 儒將歿矣云云」

9) 金 斗奉, 耽羅誌, 先生錄, 1933, p. 69

10) 淡水契, 增補耽羅誌, 1954, p. 491

八月七日交龜即出禾北浦十日夕東風大作余以歸心如矢勒令發船曉泊楸子島十七日得西北夜泊梨津自禾北浦同發之遷任馬船不得還泊後廿餘日更發云¹¹⁾

當時의 뱃길은 數十日이 걸림은 예사였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梁 憲洙는 濟州牧使 在任 二年餘 歷代 牧使中에서도 많은 善政을 베푼 牧使로 꼽히고 있다.

島民을 사랑했고 積弊를 一掃한 牧使로 되고 있는 그가 濟州牧使로 赴任하였을 때의 島民에 대한 첫 印象을 「訓民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一言蔽之 可哀者吾民也 浦氓則性命於風濤而業之 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 終歲勤勞式日奔奏 畢竟其絲之身穀之腹則舉不免鵝鶻之形

곧, 濟州島民에 對한 첫 印象은 「불쌍하다!」하는 한가지 생각에서 그의 濟州 行政이 시작된 것이다.

梁 憲洙 스스로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老父母 밑에서 자랐기에 當代의 巨儒 華西 李 恒老의 門人이 되었으면서도 文科를 버리고 出世가 빠른 武科를 擇한 爲人이다.

梁 憲洙가 濟州牧使로 赴任하고 보니 島民의 生活은 불쌍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의 弊習도 많음을 發見하고, 島民의 生活을 改善 向上시키려면 이 弊習부터 一掃해야 하겠다고 判斷된 데서 만들어진 것이 「訓民篇」이다. 이 「訓民篇」은 教化爲先政策인 그의 行政的 信條의 所産이겠으나, 이에 關한 問題는 次章에서 論하기로 한다.

그가 濟州牧使로 赴任해온 이듬해인 乙丑年(1865)에는 일찌기 보기 드문 大風雨가 本島를 휩쓸었던 것이다. 그 慘狀을 目擊한 著者 梁 憲洙는 島民과 더불어 痛哭을 하였다.¹²⁾

乙丑年의 大風雨의 被害에 對해서는 當時의 牧使인 著者가 朝廷으로 올렸던 「耽羅年形啓」의 文面에 昭詳히 나타나고 있다.

本島農形春夏以來頗有大登之望是白加正自七月十五日霖雨大注一直不止是白如可至於二十一日卯時忽有東南風挾兩大作飛瓦走石如葉如沙折木拔屋如草如芥以至二十二日寅時始乃寢定而公解之稍舊者舉皆傾壓民屋之已者莫不飄沒是白加乎…穀物一齊摧剝無復餘地至於沿浦鹹水激揚延及高陵無論穀草如鹽沉澆甚者至於拔根而洗去一日之內全島便赤閭閻號哭之聲遠近相連田野慘絕之色彼此無分而第以博詢老農則咸曰已發之穗粒既俱落固無可論是白遭至於未發之穗若得風息後即注以教日之雨則庶或有更起結實之望云而令春二十二日

11) 梁 憲洙, 荷居集, 「出戰日記」序頭

12) 淡水契, op. cit., p. 49

寅時以後旋即開霽以秋陽已至多日則餘存之苗類筋泥土者日漸枯白處處同然可謂耳不忍聞目不忍見¹³⁾

古來로 濟州島는 颱風의 被害가 甚한 곳이어니와 梁 憲洙가 濟州牧使로 赴任했던 이듬해인 乙丑年의 長霖, 颱風 그 뒤의 曝陽에서 빚어진 本島 三邑의 慘狀은 「耽羅年形啓」의 表現 그대로 「耳不忍聞目不忍見」이었을 것이다. 이 罹災民들을 救恤하기 위하여 朝廷으로 올렸던 上記 「耽羅年形啓」를 비롯한 「請賑貸啓」「畢賑啓」¹⁴⁾ 등을 보면 그가 罹災民을 救恤하기 위하여 얼마나 東奔西走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濟州島의 農形이 天災를 입어 凶作을 면치 못하였을 때, 그는 이를 朝廷에 알려 救恤하는데 最大의 努力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行政에 있어서는 明白 公平하고 褒賞孝烈과 革弊癘民에 힘썼으니 島內 到處에 그의 善政碑 除弊碑 永世不忘碑가 서있다.

現存한 그의 頌德碑로는 지난 날 濟州牧 政廳이었던 現 警察局 前庭에 남아 있는 「使相 梁公憲洙永世不忘碑」를 비롯, 濟州市 二徒洞 民俗博物館 境內에 있는 「使相 梁公憲洙善政碑」, 濟州市 外都洞 「月臺」에 있는 「使相 梁公憲洙善政碑」, 安德面 倉川里 「옥밥물」 泉邊에 있는 「使相 梁公憲洙除弊碑」, 濟州市 三姓祠 境內에 있는 「使相 梁 憲洙紀念碑」, 이 밖에도 지금은 없어졌으나 있었음이 確認된 것만도 濟州市 禾北洞 喚風亭 앞에 있었던 永世不忘碑, 朝天面 朝天里 戀北亭 南側에 있었던 除弊碑등을 들 수 있다.

鮮朝時代의 수많은 濟州牧使中 善政碑나 功績碑를 남겨 놓은 牧使도 十指 안에 들며, 어떤 牧使의 경우는 그 碑石을 둘까지 남겨 놓은 牧使도 있긴 하다.

碑石으로서 어느 特定人이 功績을 評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島內 到處에 梁 憲洙의 善政碑 除弊碑 永世不忘碑가 이렇게도 많이 서 있다고 함은 島民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던가를 推定할 만 하다. 그가 濟州島를 떠날 때의 光景을 「士女如別父母」¹⁵⁾란 表現으로 남겨 놓은 地誌 記錄의 意圖도 알 만 하다.

2.2.3. 濟州牧使 梁 憲洙는 1866年인 高宗 3年 丙寅 6월에 承政院 副承旨로 下命을 받고 8월에 本島를 떠났으며¹⁶⁾ 9월에는 다시 訓練都監 左別將이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이른바 「丙寅洋擾」¹⁷⁾가 일어나자 그는 다시 巡撫營 千摠을 拜하고 我軍의 先鋒으로 出征, 江華島

13) 梁 憲洙, 荷居集, 卷之一

14) Loc. cit.

15) 淡水契, op. cit., p. 491

16) 梁 憲洙, 從政錄, 1888

17) 朴 俊圭, 「韓半島 國際政治化의 背景과 過程」 國際問題 通卷77號, 1977, p. 82

「高宗 때, 大院君의 기독교 彈壓을 契機로 일어났던 國難이었다.

高宗의 登極으로 政權을 잡게 된 大院君은 1966年 4月~5월에 기독교에 對한 彈壓을 斷行하여 主教 시몽(Siméon)을 비롯 베르노(Berneux), 張敎一等 9명의 건도사와 南鍊三이하 多數의 教徒를 處刑하였다.

이 때 難을 免한 傳道師 리델(Ridel:李德兒)이 간신히 山東半島의 芝罘로 脫出하여 프랑스의 支那艦隊司令官 로제(Roze)에게 告變하고, 로제는 다시 駐濟代理公使 벨로네(Bellonet)와 協議 宗主國인 淸과 단판하였으나 淸이 責任을 回避하였으므로 佛艦隊는 66年 11월에 朝鮮征伐을 敢行하였던 것이다.」

鼎足山城의 戰況에서 大捷하니 同 10月에는 漢城府 右尹으로 特陞되고 곧 이어 漢城府 左尹 등 乘乘 榮祚의 諱이 特였던 것이다.

그가 洋賊을 討아 戰鬪에 臨할 때의 忠國精神과 毅然한 態度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고 있다.

一心向國不愛軀命 在軍中與其子書訣以必死勉其讀書 從侄柱石寄衣答曰 上馬忘家臨陣忘身今將渡海誓不生還 投衣而起¹⁸⁾

여기 「上馬忘家 臨陣忘身 今將渡海 誓不生還」의 決意야말로 軍人精神의 龜鑑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가 危險하고 不利한 敵陣으로 들어갈 때 大院君이 書狀을 보내어 回軍을 命하였으나 그는 大膽하게도 돌아서지 않았다.

乃率五百人 各持二日糧 方乘船中軍以 大院君命致書使回軍 公答書曰 軍已乘船若復回則不可復用兵矣 衆欲退走 公拔劍誓曰 倘兵雖十萬無用 汝等皆去吾獨渡也 衆乃登船云云¹⁹⁾

武人으로서의 臨戰無退의 그 精神은 花郎道精神에서 發源한 우리 武人精神의 根幹이라 하겠지만 忠武公 李 舜臣을 거쳐 다시 忠莊公 梁 憲洙에 이르러 그 精華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國軍의 傳統的 精神像을 定立하려 할때 梁 憲洙는 다시 한 번 빛을 볼 것이다.

그가 「丙寅洋擾」에 있어서 탁월한 指揮力을 發揮하여 洋賊을 擊退시킨 功은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忠武公 李 舜臣의 功績과도 並稱될 수 있는 것이니, 그는 「忠莊」이란 諡號를 받고 있다. 그 뜻은

應國忘家曰忠武能特重曰莊諡憲洙字敬甫號荷居華西門人武刑曹判書禁衛大將丙寅勝捷江華洋擾²⁰⁾

곧 그의 憂國忠誠, 武將다운 資質, 丙寅勝捷의 功勳으로하여 그는 「忠莊」이란 諡號를 下賜받은 것이다. 丙寅洋擾의 戰況을 밝혀주는 「出戰日記」는 忠武公의 「亂中日記」와 더불어 貴重한 戰爭日記로 남아 있는 터이나, 丙寅洋擾는 壬辰倭亂 처럼 長期의 國難이 아니었으며, 江華島 鼎足山城에서 敗한 佛蘭西 艦船은 이내 後退하여 버리므로서 國民에게 끼친 恐怖와 弊害도 壬辰倭亂에 比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丙寅洋擾에서 세운 梁 憲洙의 功勳도 歷史의 갈피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18) 贈諡忠莊梁公神道碑銘

19) Loc. cit.

20) 南原梁氏世譜, 卷之三, 諡典錄

2.3. 「訓民篇」이 著述되던 당시의 社會的 背景을 考察하고자 한다.

「訓民篇」이 著述되던 高宗元年, 곧 1864년의 濟州島의 社會는 한 마디로 表現하면 暴風一過後 아직도 安靜을 되찾지 못하고 있던 狀態였다고 하겠다.

그 暴風은 通過하였지만 아직도 濟州社會에는 不安과 虛脫이 무겁게 支配하고 있던 時期였다고 하겠다.

그 暴風이란 것은 「訓民篇」이 著述되던 高宗元年(1864)으로 부터 2年前인 哲宗13年(1862)에 있었던 姜 悌儉 金 興采등이 主動이 되어 일으킨 民擾임을 指摘할 수 있다.

이 民擾에 對하여 「耽羅紀年」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哲宗十三年...多十一月 土人 姜 悌儉 金興采等作亂 逐牧使任意大 時濫捧場火稅 民多怨謫 悌儉等 囚稱救弊 應之者甚衆 陷州城 毀破家屋 戕殺奸吏 遷牧使任意大於禾北浦²¹⁾

곧, 場火稅를 함부로 거둬들인다고 하여 姜 悌儉 金 興采등이 亂을 꾸민 것인데 奸吏를 杖殺하고 牧使를 쫓아내는 등 濟州社會는 完全히 無法 天地가 된 것이다. 이 事件에 對하여 高 性謙은 다음과 같이 附言하고 있는 것이다.

執稅場田 例從豐歉 騷擾之往往 闕發非他故也 飢寒切身 告籟無處 或有愚夫一呼 影從而響應者輒數萬人 其爲民牧者 可不慎哉²²⁾

곧, 場田에 稅를 매기는 것은 그 해의 豐凶에 따르는 것이 例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끔 騷擾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民牧者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당시 社會의 一側面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民擾의 經過에 대하여는

哲宗十四年...春正月 牧使鄭岐源 捕姜悌儉金興采誅之 時民擾大熾 鄭岐源 撫綏鎮壓 捕魁首正刑 民心稍定²³⁾

곧, 民擾가 일어났던 이듬해에 鄭 岐源牧使가 赴任해와서 騷擾의 主動者인 姜 悌儉 金 興

21) 金 錫翼, op. cit., pp. 440—441

22) Loc. cit.

23) Loc. cit.

采등을 잡아 죽였던 것이므로 그 騷擾는 한 때 더욱 熾烈해졌던 것인데, 鄭 岐源牧使가 다시 그 魁首를 잡아 죽이고 騷擾를 鎮壓하니 民心이 가까스로 安定되었다는 것이다.

朝廷에서도 濟州社會의 흥흥해진 民心을 安定시키기 위해 配慮를 하였던 것이니, 그 方法의 하나로 察理使 李 建弼을 보내어 文武科를 배풀어, 前에 없이 많은 及第者를 내었다. 記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察理使李建弼 設文武試取士 文科 宋祥淳 金炳洙 高景峻 慎執祐 韓錫胤 五人 武科 梁濟厦等三十八人也 文武科壯元 特授典籍主簿²⁴⁾

그 이듬해인 高宗元年 三月에 梁憲洙가 濟州牧使로 赴任해 왔으며 赴任 五個月만에 「訓民篇」을 著述한 것이므로 당시의 濟州社會는 아직 크게 安靜을 되찾지는 못한 時期였다고 보아진다.

2.4.1. 漢文體 「訓民篇」은 아래와 같다.

訓民篇

營門蒞職、今至五朔、參互見聞、概得民情、一言蔽之、可哀者吾民也、
浦氓則性命於風濤而業之、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終歲勤勞、式日奔奏、畢竟其絲之身、穀之腹、則舉不免鶉鵠之形、嗚呼、我

聖上如傷若保之意、將何以對揚、宵衣旰食之憂、將何以報效哉、蓋民之所以生者、固待乎衣食而莫切於孝悌、官之所以治者、固主乎政令而莫先於教訓、民而無孝悌、雖有衣食、決不得爲生、官而無教訓、雖有政令、亦不得爲治、然則孝悌、重於衣食、教訓、急於政令者、不待兩言而審矣、衣食、固不得戶惠而人賜、教訓、宜可以耳提而面命、故、茲數莫切之義、用布莫先之諭、○眞諺後錄、播諸各里、凡各該里、○士林長老、卜尊位頭民、每於晨夕之暇、招會里內子弟、婦女、讀而聽之、詳諭細曉、各加勉勵、毋或違戾、使之家家稱扇枕之郎、里里爲讓畔之俗、則豈不休哉、夫內地之人、每稱獐頭、輒曰濟州島民、而自經民亂、尤謂不誣、凡爲吾民者、聞此不美之日、首獨不憤痛於心乎、營門、亦不勝爲汝輩冤之矣、蓋秉彝之良、豈有島陸之殊哉、彼固不諒、我當加勉、凡我父老、諱複戒諭、凡我子弟、銘着勉勵、別圖新譽、痛雪舊恥、千萬是幸、

凡人、匪父何生、匪母何育、欲報之德、昊天罔極、故、承順其志意、適養其口體、殫誠竭力、靡不用極、以及葬祭、終身以之、然後、始可爲萬一之報也、若或不爾、天賦之善、鬼嫉之、人誅之、何以立於世乎、雖身文繡而口膏粱、不可謂之生也、夫孝於親者、耕于田、則天與之豐、商于貨、則人助之厚、此、必然之理也、不孝於其親者、天不與人、不助而百事不成、終至

24) Loc. cit.

滅亡豈可不懼哉 牙兄弟者 卽一血氣之分也 人所親愛、孰有比於天地之間哉 牙萬鎰之財 卽朝夕可復得 卽兄弟之身 一亡則已矣 故 兄而不友 弟而不弟 曾禽懷之不若、亦何以立於世乎 牙推茲以往 在親戚則宜盡其睦 在鄉黨則宜盡其和 事長老以敬 接朋友以信 然後始乃立於世而不負其生 於是乎父母安而孝乃全矣 此豈非最先務而必當行者乎 牙故 凡爲吾民者 必須孝於親 友于兄弟 睦于親戚 和于鄉黨 敬長老 毋或悖慢 信朋友 毋或忿戾 凡有患難 卽匍匐相助 凡有過從 卽忠義相勸 卽毋欺人取物 卽毋行淫亂俗 卽毋雜技敗產 卽毋健訟爭鬪 卽克勸乃職 卽克昌乃門 使人稱濟州一島曰是鄒是魯云爾則營門亦與有榮焉

本島民人健訟之習、誠一大弊也 本事得失、元不甚大 設如快志 卽畢竟無補而往來之勞 卽逗遛之費、已自多缺則何健之至此也 甚至於兄弟相訟 親戚相讎 是可使聞於隣邑者乎 牙閉閣思過 實在於爲官 實不勝悚服之極也 蓋其互相綢繆之端 果隱微奸僞之狀 何得以因其文不成說之牒 辨其訴不以實之地乎 營邑 遠而疎 隣里 比而親 遠而疎者 難的其眞僞 比而親者 易詳其曲直 十室之邑 必有忠信 一里之聚 豈無公議 豈自今爲始 無論大小民 凡有可訟之事 必先進告于該洞任 細卞其曲直 務歸無訟而不得已告官糾正者 所志末端 五所任、各其著名 的安該洞圖書然後 始許聽理是矣 如或不覽狀辭 卽信手着押 卽自官兩造之際、卒無事實者 該洞任 罪關誣罔 當勸重律是遣以訟民言之 或倫安圖書 卽冒僞入呈則亦當有別般嚴懲之道 以此知悉 卽惕念毋違向事

夫沈惑雜技者 誠未曉其意也 凡遭詬辱 莫不憤怒者 爲其貶己也 凡遭橫奪 莫不訟推者 爲其惜己也 胡爲乎至於雜技 卽官長、禁之 卽隣里 嘖之 卽父母憂之 卽親戚、背之 而其親則十年勞苦而聚之 其子則一朝談笑而擲之 是忍也 孰不可忍也 是向於人也則一言之逆而怒之 命今也 奉衆罵而不顧 卽向於人也則一錢之較而訟之 命今也 蕩家產而不惜 此 明是五臟、不具者也 生不得爲民於國 死不足爲威於家 宜其殺之 死赦 爲民除害也 前後禁令、不趨申嚴而所面洞任輩、尙無一人現報者 是何慢令之極也 雜技之爲物、實非一人獨爲之事也 少不下四五 多或至十餘 苟欲其察 寧或不知 是從令以往 將此諭令 卽日夕誦曉 卽毋或更犯是矣 如有不悛者 卽爲成報 促上 卽以爲依律勘處 是 卽又或如前慢令 卽不即探報 卽斷當嚴懲無赦 卽以此知悉 卽惕念毋違向事

甲子 八月 日

使

2.4.2. 國文體「訓民篇」은 아래와 같다.

훈민편허라

영문이 도입 훈지오삭의 보고듯는 비를 참호 하야대 개민정을 안이 웨일 언 하고 가히 불쌍 혼거신 내 빅성이 로다 포존 빅성은 풍도의 목숨을 붓쳐 업을 삼고 산촌스 립은 돌닷의 손발이 병되 도록 힘 써허마

다근로하고날마다분류하되될경몸의웃입고빈에꼭식호른다순작과세육기얼골을면치못하이실
프다우리

성상빅성보시기를상홀씩시베기샤어인즈식안보홈ㅁㅅ신싹싹엇지씨디양하며밤의웃입주시고늦
게발잡슈는근심을엇지씨가프리오 내기빅성의사눈배논의식을미드되효도와공경흠만근절호
미업고관장의다시리논바논정영을주장하되ㅁ리치만몬져호미업시이빅성이효제엇지면비록의
식이니셔도살미되지못하고관장이ㅁ리치미업시면비록정영이니셔도다시리미되지못하논이그
려홀직효제의식보담중하교교훈이정녕보담급하든두말업시즈상하도다의식은집마다주고스롭
마다유지못하려이와가리치은가히씨귀를이슬고듯하야명홀센고로이러케근절호의와몬져홀효
유을베풀되진셔와언히로후룩하야자이예지위하니자이선비늘근이와존위두민이딛양아춤전역
의동너즈겨와보네을모와일켜들려즈상이기유하교각각힘써혹어그씨제말라하여곰집집마다벼
개예부체질호논사나의놀일코고모을마다밭스스양하논풍속이되면엇지아른답지아이하야너더
스롭들이딛양영악하물일커매트득제쥬섬스롭이라이르고밀난후로부터더욱올타이르니이
르나빅성더라이불미홀말을듯고홀로마음의분치아이호나영문이또호너의를위하야원통하로라
대키덜엇호어진모음이엇지도록이다르랴저의진실로아지못하거이와내더욱조심홀지라르뜻우
리부로는경계와효유를순순이여러번이르고르뜻우리즈제은효유싹실명심하교착염하야별로히
새로칭찬하물도모하야집히이전부스리물싹치미천만다행하도다

르뜻스롭이아비아이면엇지나며어미아이면엇지기러나이요덕을가꾸고저하면하늘이ㅁ히엇
논고로그싹싹잇고그몸을바쁘려효양을극진이하교힘을다하야씨쥬거장스와져스하미밋춤지
몸미도도록써호후에가히만분지일이나가푸미되논지라만일그러치아이하면하늘이싹하호시고
귀신이미여하교스롭이수진논이엇지써세상의용납하리오 비록몸의비단을입고입의고량을머
저도가히살미라이르지못홀지라어버이게효도하논재논농스하면하늘이풍연쥬고장스하면스롭
이후의로돕논이이논반듯호이치라어버이게효도치아이하논자논하늘이쥬지아이하시고스롭이
딛기아이하야빅스이루지못하야ㅁ춤내멸망하논이가히두업지아이하나형제논호혈그를논훈바
라그친하교스랑하미취천지간에비하리오 만양지물은아침의일코저역의다시어드려이와형제
의몸은호번업시면그뿐이라 그런고로형이우리아이코아우공경아이하면금슈만즈지못홀지라
엇지세상의서리오 친척에돈목하교향당에화집하교어문을섬기되공경의로써하교벉싹샤귀되
신으로써호후에비로소형제하교그살물등지디아니하야부모편안하교효도은견홀지라 이엇지
몬져힘써반다시형홀재아이라 르뜻빅성되논자는반드시어버이게효도하교형제에우이하교일
개예화목하교향당에화집하교어물을공경하야혹패만치말고버싹밋버하야혹분려치말고환난상
구하며충의상권하교스롭을쇼겨지물을가지디말며음형하야풍속을어지리지말며잡기하야가산
을과치말며송스쇼하하야드토지말고죽업을부지련이하야가문을창성케하야스롭으로하야곰져
주호섬을일코되쥬나라히요노나라히라하면영문이또호너부러영화이시리르다 이섬빅성송스
쇼하호논십이큰페라 근본일이크지아이하니설혹모음에쾌하여도될경도움이업고왕너하논슈

고와두류한논허비만훈죽엇지송스조와함미이코트노한물며형제서로송스하고친척이서로원슈
되니엇지인읍의들이야 문틀닷고허물을성각한미 희망이관장의게이시니실상두엽고부혀리물
이기지못한리로다 셔로엮키눈곳과은미하고간사한얼고올엇지말아이된쇼지늘인한야그간사
하고실롭지아이한일을분별하라 영음은머러성고동인눈자가와친하니멀고성권자눈그진위
을알기어렵고작갑고친한자는그꼭적을알기쉬운지라열집잇는고올에도반드시충신이시니훈
모든데엇지공번한논이업시리요 인저로부터크고져근뵈성이가히송스한염죽한일이잇거
든몬저동임의게진고한야주세히꼭죽을분별하야송스올업게하되마지못하야관가의아리고발월
셔신쇼지곳잇오쇼임이착명하고도셔올마친후에정쇼하게하되쇼지스엔을보지아이하고착명하
엿다가관정의더번훈제실상업는자는동임은무망한죄올당홀거시요송민이혹도셔올도격하야마
치고쇼계경하면별반업치하리니착염하야어기지말라

그잡귀올혹한논재그쓰실아지못홀지라후옥을만나면분로한자는그몸나트리물위함미요황
탈을만나면송스한자는그몸악귀물위함미라 엿지잡귀여이르러논관장이금하고이우시우짓
고부외근심하고친척이등지논이그어버인죽십연물슈구로이모운거실그즈식은일쵸의웃고던지
니이올차마하곤므어실가히차마못하리요상에는스름이훈말거스리면노한다가이제는모다우지
져도도라보지아이하고상에는스름과훈도를교계하야송스한다가이저는가산을탕진호되악귀지
아이하니논정영오장이업는자라사라도나라희뵈성되지못하고주거되집의설움되지아이한
이쥬기고노흠미업세뵈성을위하야해오올제거홀지라 전후금한영이엄하되면동임들이훈스
름도잡바보함미업시이엇지영을어기논요 잡귀는훈스름이홀로한이리아이라져거도소인
이요만하면십여명이니진실로슬피고져하면엇지아지못하리요 이후로이영을가져주야외호고
기외혹다시범티말되만일고치지아이한자는잇거든곳보장을일위고자바올려써법을의지하야다
시리되혹전사치영을만홀리네게곳보치아이하면단담업치하리니착염하야어기지말라

2.4.3. 「訓民篇」은 그 內容으로 봐서 前文과 本文, 이렇게 두 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文에 있어서는 著者が 牧使로 赴任해 온 濟州島에 對한 첫 印象과 「訓民篇」 著述의 趣
旨를 밝히고 있으며, 後篇인 本文에 있어서는 道德을 尊重하고 民俗을 淳化하기 위한 良習
의 勸獎과, 아울러 島民生活에 있어서의 弊習을 지적 이를 除去하기 위한 方法과 對策을 陳
述하고 있다.

2.4.3.1. 前文에서는 島民의 生活狀과 「訓民篇」 著述의 趣旨를 밝히고 있다.

가) 島民의 生活狀

營門位職 令至五朔…何以報効哉牙

영문이도입한지오삭의…엇지써가프리오

濟州牧使로 赴任하여 五個月동안 島民生活를 알아보았더니 農民이나 漁民이나 한가지로 一言以蔽之하면 불쌍하다는 것이다.

漁民들은 風濤에 목숨을 의지하여 生業에 從事하고, 農民들은 돌밭에 나아가서 年中 勤勞하고 있으나, 衣食이 充足되지 못하니 聖上이 百姓을 子息처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對할것이며 百姓을 근심하시면서 寢食조차 饋하시는 그 뜻을 어찌 諒할 수 있으라는 것이다.

濟州島는 古來로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백성의 살림도 가난한 곳으로 되어있다.

高麗文宗十二年門下省奏耽羅地瘠民貧 惟以木道經紀謀生 州記土性浮燥墾田必驅牛馬以踏之 連耕二三年則穀穗無實 不得已又墾新田 功倍獲少 所以民多困窮²⁵⁾

世宗十年 時朝議定本島稅 總大臣筵奏曰 此島地勢 山高多風災 谷深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歉 若責細稅 民無以生 王從之遂寢²⁶⁾

道邊禾穀不實 蕪穢如荒田²⁷⁾

民多困窮 地多岩石 鋪土數寸 土性浮燥²⁸⁾

三色皆在漢拏山麓 平土無半畝 耕者如挑剔魚腹²⁹⁾

余見耕田者 農器具狹少如兒戲之具 問之則曰入土數寸 皆巖石 以此不復深耕云³⁰⁾

島中土地 皆是砂磧 田畝甚瘠³¹⁾

以上은 한결 같이 濟州島는 土性浮燥 禾穀無實 民多困窮의 實情을 反映하고 있는 記錄들이 다.

濟州島는 環海의 高장이어서 海村의 漁民들은 바다를 相對로하여 生業을 하고 있거니와, 漁民들의 生活도 가엾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文獻에 비친 濟州漁民의 生活은 아래와 같다.

海錄 濟州人孫孝枝曰 我州處在大海中 波濤視諸海尤爲凶暴 貢船商船絡繹不絕 漂流沈沒十居五…六 女多三倍於男爲父母者生女則必曰是善孝我者 生男則皆曰此物我兒乃鯨鯢之食也云³²⁾

25) 李元 續, 耽羅志, 1651, p. 55,
金 錫翼, op. cit., p. 350

26) Ibid., p. 274

27) 金 尙憲, 南槎錄, 卷之一, 1602, (耽羅文獻集) p. 42

28) Ibid, p. 51

29) Loc. cit.

30) Loc. cit.

31) 李 健, 濟州風土誌, 1635, (耽羅文獻大集) p. 196

32) 金 尙憲, op. cit., p. 54

況島中漁戶採鮫之時 捨性命投身於百丈溟波 犯數龍窟 利則得一二不利則空手而出 又不利則不得出矣 直所謂仁者宜戰慄者也³³⁾

其中所賤者潛也 採潛之女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入海採潛 其採潛之時則所謂潛女赤身露體 遍滿海丁 持簾浮海 倒入海底 採潛曳出 男女相雜 不以爲恥 所見可駭 生該之捉 亦如之如是採取應官家所徵之役³⁴⁾

以上の記錄들은 生命의 威脅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漁民生活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濟州島民은 農民 漁民을 莫論하고 大體로 悲慘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니 甚至於는 도롱이나 멍석으로 몸을 가리우고 사는 사람도 있으나, 氣溫이 따스하기 때문에 凍死하는 사람은 없다³⁵⁾고 하는 記錄까지 보인다.

要는 濟州牧使로 赴任해 온 梁 憲洙의 눈에 비친 濟州島民의 生活도 上記文獻의 諸記錄과 마찬가지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하다고 보았음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겠다.

(나) 訓民篇 著述의 趣旨

蓋民之所以生者…千萬是幸

덕지익성이 사는바는…천만다행호도다

여기서는 孝悌와 教訓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內陸人들의 濟州人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밝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잘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訓民篇」을 著述한다는 「訓民篇」著述의 趣旨가 밝혀지고 있다.

百姓의 生活에는 衣食이 가장 重要하다 하겠지만, 그것은 孝悌보다 절실한 것이 아니며, 官의 治民에 있어서는 政令을 주로 함은 勿論이나, 亦是 教訓보다 急한 것은 아니다. 民은 孝悌가 없으면 비록 衣食이 足하여도 사람의 삶이 아니며, 官은 政令이 있어도 教訓이 없으면 治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孝悌야말로 衣食보다 重要하고 教訓 또한 政令보다 時急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衣食은 집마다 사람마다 足히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孝悌나 教訓은 誠意만 있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여기 漢文과 國文으로 島民이 지킬 바를 적은 「訓民篇」을

33) Ibid., p. 20

34) 李 健, op. cit., p. 198

35) 金 尙憲, op. cit., p. 160

「樹木多多青 積雲滿庭 蝴蝶飛來 庭中草色長春興 京城三四月無異 民之甚貧者或以一簑衣掩體 或穿網席蒞走冰役而得免凍死者以此也」

말들이 삼리마다 보내는 터이므로 각리의 士林 長老와 尊位 頭民은 子弟나 婦女를 모아 읽어 들려주고 詳細히 풀이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기에 힘쓰라는 것이다.

특히 內陸 사람들은 濟州島民을 볼 때 매양 獠頑하다고만 보아 왔고, 最近의 民亂을 거치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니 憤痛한 일이 아닐 수 없거니와 島民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고칠 수만 있으면 多幸이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民亂이란 어느때의 어느 民亂일까? 그것은 上述한 바 社會的 背景에서 밝혀냈던 哲宗13年 11월에 姜 悌儉 金 興采등이 主動하여 奸吏를 杖殺하고 牧使 任憲大를 禾北浦로 逐出 해 낸 民擾를 가리키는 것이다.³⁶⁾

哲宗13年 11월에 일어난 民擾는 그 이듬해인 哲宗14年 正月에 到任한 牧使 鄭 岐源에 의하여 主動者 姜 悌儉과 金 興采가 誅殺됨으로써 한 때는 더욱 熾烈해졌던 것인데, 다시 主動魁首를 잡아 죽임으로써 鎮壓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해인 高宗元年 (1864)에 梁 憲洙가 濟州牧使로 赴任해온 것이니 그는 濟州 赴任에 앞서 任地 濟州에 對한 豫備知識을 가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濟州人이 奸吏를 杖殺하고 牧使를 내쫓고 했다는 事實을 들은 中央人士들 間에는 濟州人에 對한 印像이 좋지 않았던 것도 事實이라고 推定된다.

이러한 前後 事情은 「訓民篇」의 著者 梁 憲洙로 하여금 「內地之人 每稱獠頑輒曰濟州島民而自經民亂尤謂不誣」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訓民篇」을 著述한 目的은 民에게는 衣食보다는 孝悌를 崇尚하도록 하고, 官에게는 政令보다는 教訓을 앞세우도록 하여, 官民이 努力하면 집집마다 孝子(扇枕之郎)가 나올 것이요, 마을마다 서로 讓步하고 協助하는 좋은 風俗(讓畔之俗)이 나올 것이며, 이렇게 되면 濟州島民의 지난 날의 수치스러움도 씻을 수 있는 것이니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2.4.3.2. 本文에서는 倫理道德의 實行과 惡習의 防除, 積弊의 除去로서 健實하고 善良한 島民 社會가 具現되기를 強調하고 있다.

(가) 孝 悌

凡人匪父何生…何以立於世乎

므릇사람이…엇지세상에서리요

여기에서는 父母에 對한 孝道와 兄弟間의 親愛를 強調하고 있는 바, 父母의 恩德은 昊天罔極이나 孝誠이 至極한 者는 農事를 지어도 하늘이 도와 功績이 잘되고, 장사를 하면 사람이 도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이는 必然의 理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父母에게 不孝하

36) 金 錫翼, op. cit., pp. 44—441

는 者는 하늘이 돕지 아니하고 사람이 돕지 않을 것이므로 百事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終乃 滅亡하고 말 것이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兄弟는 한 血氣를 나눈 者이므로 그 親愛함이 天地間에 比할 바가 없는 것이다. 財物은 아침에 잃고 저녁에 얻을 수가 있지만, 兄弟는 한번 잃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兄이 弟를 사랑하지 않고 弟가 兄을 恭敬하지 못하면 禽獸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되었다면 사람으로서 어찌 몇몇이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梁 憲洙 自身도 當代 巨儒인 華西 李 恒老의 門下에 들어섰었지만 老父母를 생각한 나머지 文科를 포기하고 出世가 빠른 武科를 擇하였던 것이다.³⁷⁾

(나) 親戚, 鄉堂, 長老, 朋友에 對하여

推茲以往…忠義相勸

친척에 돈독하고…충의상권하고

여기에서는 親戚 사이의, 鄉堂에 있어서의, 長老들 對할 때의, 朋友를 사귄 때의 마음의 기본 자세에 對하여 말하고 있다.

곧, 사람이 피려던 親戚에는 敦睦을 圖謀하여야 하고 鄉堂에 있어서는 和集하여야 하며, 長老는 恭敬으로써 섬기고 朋友는 信義로써 사귀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어질고 착한 몸가짐을 하게 되면 父母도 편안할 것이요 이로써 孝道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일 뿐더러 또한 行할만 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信義로써 사귀는 벗끼리 患難을 만나면 서로 도와주고 忠義는 서로 勸하여 行하고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 惡習防除

毋欺取物…亦與有榮焉

스물을쇼겨…영획이시리로다

여기에서는 非行을 말도록 強調하고 있다.

사람을 속여 財物을 가지지 말고, 淫亂한 行動을하여 風俗을 어지럽히지 말며, 雜技(도박)와 訟事를 하지 말 것이며, 말은 바 責任을 다하여 家門을 昌盛케 하면 세상 사람들도 濟州 島를 볼 때 鄒나라나 魯나라와 견주며 칭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島民이 좋을 뿐 아니라 牧使 自身으로서도 榮光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37) 贈諡忠莊梁公神道碑銘

(라) 濟州島民의 積弊—健訟之弊

木島民人…惕念田違向事

이섬벽성…어기지말라

여기에서는 濟州島民이 訟事를 좋아하는 弊習을 指摘하고, 그 對策을 陳述하고 있다. 甚至於是 兄弟 親戚間에도 訟事함을 보는데 그 責任은 官에게도 있으니 두려움을 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訴訟할 일이 있다면 먼저 洞任에게 告하여 거기서 曲直을 가려버림으로써 訟事를 없게 할 것이요, 不得已 官家에 告하여야 할 경우라면, 訴志(訴狀)끝에 五所任이 署名하여 圖書を 마친 後에 訴訟하게 하되, 萬若 所志 事緣을 仔細히 檢討하여 보지도 못한 채 著名하였다가 실상 없는 경우에는 洞任을 誣罔한 罪로 다스릴 것이요, 訟民이 或 圖書を 도적질하여 마치고 訴志를 提出하였을 때는 特別히 嚴히 다스릴 것이니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島民의 弊習中의 弊習의 하나로 訟事를 좋아하는 弊習을 指摘하고 있고, 그 弊習을 防止하는 方法과 그 防止하는 方法을 어겼을 때의 對策까지도 밝히고 있다.

島民은 訟事를 茶飯事로 하다 보니 官을 誣罔하는 일, 官의 圖章을 훔쳐내어 所志를 提出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다.

(마) 濟州島民의 積弊—雜技之弊

夫沈惑雜技者…惕念田違向事

그잡귀을혹하눈제…착염 하고어기지말라

여기에서는 雜技의 弊端과 그 對策을 말하고 있다. 먼저 雜技에 惑하는 者의 어리석음을 指摘하고 있다. 곧 官長이 禁하고 이웃이 꾸짖고 父母가 근심하고 親戚조차 등지는 이 雜技는 父母가 10年동안 苦生하여 모은 財産을 그 子息은 一朝에 던져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情凝 五藏이 있는 者의 所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살아서도 백성의 구실을 못할 뿐 아니라 죽어서도 서러워할 사람이 없으며, 죽는다 해도 容赦 받을 수 없는 者이니, 그 害毒을 除去하지 않을 수 없다는 斷然한 決意를 表明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를 禁하는 수가 없는 것은 이하였지만 面洞任들이 잡아 報함이 없어 그 수를 어겼으니 默過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雜技는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5人, 많으면 10餘人이 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모르겠느냐는 것이다.

此後로는 이 「訓民篇」을 晝夜로 외우고 깨우쳐 만일 다시 수를 어기는 者 있어도 報치 않

으면 斷然코 嚴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雜技, 곧 도박을 일삼는 者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島民을 위하여 이 社會的인 害着을 除去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面洞任들이 잡아 報함이 없어 이 弊習이 없어지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슈을 어기는 者가 있어도 잡아 報함이 없다면 容赦하지 않을 터이므로 결코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訓民篇」이 內容을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I. 前文

- A. 島民의 生活狀
- B. 訓民篇 著述의 趣旨

II. 本文

A. 良俗勸獎

- 1. 孝悌
- 2. 親戚, 鄉堂에는 和集
- 3. 長老敬事
- 4. 朋友有信
- 5. 患難相助
- 6. 忠義相勸

B. 惡習防除

- 1. 欺人取物
- 2. 行淫亂俗
- 3. 雜技
- 4. 健訟

C. 健訟의 弊와 그 對策

- 1. 健訟의 弊
- 2. 訟事抑制
- 3. 訟事節次

D. 雜技의 弊와 그 對策

- 1. 雜技의 弊
- 2. 犯者成報
- 3. 依律勘處
- 4. 不報嚴斷

2.5.1. 「訓民篇」은 漢文體와 國文體, 곧 두 文體로 되어 있다는데서 國語學的인 貴重한 資料가 될 수 있다. 그것은 國語의 語彙와 音韻의 歷史的 變遷에 있어서 朝鮮末期의 國語를 밝히는 資料가 될 수 있다.

國語史에 있어서, 英祖 때에 시작되어 高宗 中葉까지에 이르는 150年間을 朝鮮末期의 國語로 본다면³⁸⁾ 「訓民篇」은 高宗元年의 作品이 되므로, 이는 朝鮮 末期에서도 다시 末期가 되는 哲宗 高宗 時代를 中心으로 하는 國語 現像이라고, 볼 수 있다.

高宗31年(1894)에 始作되는 甲午更張 以後의 國語를 現代國語로 보는것이 되므로 이 「訓民篇」은 朝鮮 末期에서 現代語로 넘어오는 關門에 있어서의 國語가 되는 것이다.

「訓民篇」은 또한 國文學的인 資料가 된다.

「訓民篇」은 文學作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價値에 對한, 또는 어떠한 政策에 對한 自己의 意思를 強力히 主張하고 있는 論說文으로서는 그 時期에 보기 드문 文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現代의 論說文 構成 形式과도 比較해 볼 수 있는 立證性과 統一性의 있으며, 主張이 強調되고 있는 위에 강한 說得力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2.5.2. 「訓民篇」은 지금으로부터 110年前의 濟州島社會의 一斷面相을 提示해주고 있다.

前文에서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當時의 濟州島民은 農民과 漁民을 不問하고 貧苦의 生活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島民의 生活의 慘狀과는 아랑곳없이 奸吏들의 苛歛誅求는 매우 甚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奸吏에 對한 島民의 反撥과 反抗도 또한 만만치 않았었다는 具體的인 證據가 「訓民篇」의 著述보다 2年前에 일어났던 姜 梯儉 金 興采가 中心이되어 일으킨 民擾이다. 主謀한 姜 梯儉 金 興采는 다음 해에 잡혀 죽었지만 그들은 奸吏를 杖殺하고 牧使를 逐出했던 것이다.

「訓民篇」에 있어서 指摘하고 있는 「濫頑性」이나 오늘에 와서도 가끔 外部人에 依하여 指摘되고 있는 「排他性」 같은 것은 오랜 歷史를 通하여 中央과 멀리 떨어져 있는 絕海 孤島인 濟州島에 對한 官吏들의 繼續된 苛歛誅求, 이에 對한 島民의 反應 現像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作用과 反作用에서 惹起된 社會的 雰圍氣를 意識하면서 濟州牧使로 부임해 온 梁 憲洙는 島民에게는 孝悌忠信을 비롯한 여러 道德을 強調하는 한편, 官에 있어서는 教化를 最善의 行政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特히 島民社會의 弊習으로 健訟의 弊와 雜技의 弊, 곧 濟州島民의 訟事를 잘 하는 弊習과 賭博을 좋아하는 弊習을 指摘 이의 是正方案과 對策

38) 金 亨奎, 國語學史, 서울, 白映社, 1964, p.57

을提示했다는 것은 濟州島社會의 社會學的 資料로서도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現代에 와서도 제주도는 人口에 對比한 他地方에 比하여 訟事와 賭博이 많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음으로써, 110年前에 이미 「訓民篇」에서 지적하고 있는 弊習이 강력히 殘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道에 訟事가 많음은 濟州地方法院의 民事訴訟關係가 서울, 釜山, 大邱, 光州등에 이어, 大田, 全州, 春川, 淸州등 諸地方法院보다도 越等히 많다는 것이 統計上 나타나고 있으며³⁹⁾ 特히 제주도에는 他人을 中傷 謀略하는 性向이 많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賭博은 오늘의 濟州社會에서도 盛行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으며,⁴¹⁾ 多年間에 害 造成해놓은 柑橋園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리는 등의 弊習이 혼잡을 보고는. 이 「訓民篇」은 現代의 濟州島民에게도 切實한 敎訓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訓民篇」은 濟州社會 研究의 社會學的 資料로서도 貴重한 價値가 있다 하겠다.

2.5.3. 「訓民篇」은 一種의 行政指針書 乃至는 島政目標라고도 볼 수 있다. 이 「訓民篇」속에 陳述되고 있는 內容은 島民의 지켜야할 일, 排除해야할 일들이 指摘되고 있으며 積弊를 一掃하는 方法과 問題點에 對한 對策까지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訓民篇」著述 當時의 社會의 背景은 行政的 昏迷 直後의 일이기때문에, 이 「訓民篇」의 著述에 있어서도 그 行政的 昏迷를 수습하기 위한 行政目的的인 意義도 發見할 수 있다. 곧 그것은 中央行政府에서 派遣된 官吏들의 苛斂誅求, 이 作用에 對한 反作用으로 惹起된 姜悌儉 金

39) 法院行政處, 法院統計年報, (1974)

〈제1심진청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심수〉, p.62

〈민사본안사건 건수표〉, p.72

40) 濟州地方檢察廳 檢察長 1976年度 年末 決算記者會見 要旨〈濟州新聞1977.1.5〉

41) 濟州道唯一의 日刊紙「濟州新聞」76年 7月—77年 1月까지의 記事中 賭博에 關한 報道를 調査하면 다음과 같다.

㉑ 7月 6日字, 〈主謀級 3명 檢擧, 西歸浦賭博團〉

㉒ 7月 7日字, 〈主犯人 안잡는 一線警察, 西歸浦巨額賭博〉

㉓ 7月 13日字, 〈詐欺賭博 金씨 年餘만에 檢擧〉

㉔ 7月 22日字, 〈西歸, 거리 秩序事犯 일제 掃蕩〉記事中 賭博 3件 10名

㉕ 8月 11日字, 〈각종 犯罪 작년의 2倍〉道警, 上半期分析記事中 〈이 분석에 의하면 범죄의 격증은 도박일제 소탕령, 새마을 사범에 따른 도박신고...〉

㉖ 9月 13日字, 〈한지방 長級들이 馬雀 놀이타걸려〉

㉗ 10月 7日字, 〈旅館방 빌어 巨額賭博〉

㉘ 10月 14日字, 〈巨額 賭博, 4名 11만원 함께 摘發〉

㉙ 10月 25日字, 〈노름防止에 全力, 西歸署 柑橋수확파라盛行예상〉

㉚ 12月 10日字, 〈노름꾼 5명 摘發, 西歸浦, 판돈 18만원 함께〉

㉛ 77年 1月 12日字, 〈賭博 세패 18명 檢擧〉

㉜ 1月 17日字, 〈市등저서 巨額 도박 盛行〉

㉝ 1月 18日字, 〈賭博後 술자리, 빚이 集團暴行〉

㉞ 1月 19日字, 〈賭博 4명 檢擧〉

興采 등의 騷擾, 騷擾 主動者의 處刑, 이렇게 흉흉해진 社會的 雰圍氣를 按撫하기 위하여 施行한 文武科外 人材登用, 그 바로 뒤에 島行政을 맡고 온 梁憲洙가 著述한 「訓民篇」-이러한 一連의 事實을 列擧해 본다해도 이 「訓民篇」의 著述動機에는 行政目的的인 動機가 支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梁 憲洙는 行政의 要諦를 「教化」에 두고 民의 잘못도 「責在爲官實不勝悚赧之極」이라 自責할 줄 아는 民主的 思考方式의 行政家로서의 一面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는 乙丑年의 凶年에 百穀絶種의 慘狀을 보고는 백성과 더불어 痛哭하였던 것이며 民에게는 道德과 良習을 勸獎하고 島民을 教化하기 위한 「訓民篇」을 著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明白公平하고 孝烈應彰하였을 뿐 아니라 「訓民篇」著述의 目的 그대로 島民을 위하여 積弊를 一掃하였으므로 그의 善政과 積弊의 一掃를 기리는 善政碑 除弊碑 永世不忘碑가 島內 到處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訓民篇」의 研究는 濟州道行政의 貴重한 參考資料가 될 것임은 勿論, 이 「訓民篇」의 著者의 行政의 理想과 方法과 島民을 위한 至誠은 오늘의 道政 責任者에게도 研究해볼 만한 價値가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Ⅱ

「訓民篇」은 濟州牧使 梁 憲洙가 島民을 教化하기 위한 著述이다.

本論稿에서는 먼저 著作의 母胎가 되는 著者의 行狀과 그 著述 當時의 社會的 背景을 考察하였다.

著者의 履歷에 關한 考察에서 著者 梁 憲洙는 文武를 兼全한 朝鮮末의 武將이요 丙寅洋擾에서는 先鋒으로 出戰하여 大功을 세워 「忠莊」이란 諡號까지 下賜받고 있는 爲人임을 알았다.

그가 濟州牧使 在任期間에는 「訓民篇」을 著述하여 敎民한 공적 이외에도公私에 明白公平하였고, 革弊瘼民과 褒賞孝烈에 뚜렷한 足跡을 남긴 人物임을 알았다. 大風雨로 因한 農凶을 巡察하다가 島民과 더불어 痛哭을 했던 人情있는 爲人이었기에 飢民 救護에도 寢食을 잃었던 牧使이다. 島內 到處에 殘存하고 있는 功積碑 除弊碑 紀念碑등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訓民篇」著述 當時의 濟州島 社會는 姜 倬儉 金 興采등이 主動되어 일으킨 民擾와 이를 강압적으로 鎮壓한 直後의 不安과 虛脫의 時期였음을 알 수 있었거니와 이러한 現地의 狀況을 意識하면서 濟州牧使로 赴任해 온 著者가 赴任 五個月만에 著述 公布한 것이 「訓民篇」이다.

이 「訓民篇」은 國語國文學的, 社會學的, 行政學的으로 貴重한 資料가 될 수 있음을 確認하였으며 이것들을 網羅한 濟州島史의 어느 한 時期의 斷面을 밝혀주는 史的 資料가 될 것

이라는 것도 確認할 수 있었다.

이 「訓民篇」이 國語國文學的으로 價値가 있다는 것은 漢文體와 國文體의 두 文體로 되어 있으므로 하여 鮮朝 末期의 國語, 즉 哲宗 高宗 年間の 國語學的 資料로서의 意義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論說文體 文章으로는 稀貴한 것이면서도 그 白眉를 보여주었다는 데서 國文學的 資料로서도 貴重한 것이 된다.

이 「訓民篇」은 또한 社會學的 資料로서도 重要한 意義가 있음을 確認하였다. 그것은 먼저 「訓民篇」著述 當時의 社會的 背景으로 지적할 수 있는 哲宗 末期의 民擾를 中心으로 한 濟州島의 社會相이다. 이 民擾는 牧民官이나 奸吏들의 橫暴와 이에 對한 島民社會의 不滿, 이러한 不平 不滿의 蓄積 惡化에서 爆發한 事件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島民의 不平과 不滿을 強압적인 手段으로 鎮壓한 後의 不安과 虛脫에 잠긴 濟州社會, 이러한 島民들에게 삶의 抱望과 方向을 示여 주기 위하여 著述된 것이 「訓民篇」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訓民篇」著述의 上述한 바와 같은 社會的 背景은 島民의 生活에 있어온 어두운 斷面을 指摘해 주고 있는 社會學的 資料가 될 것이다.

특히, 積弊를 一掃하기 위하여 지적한 濟州社會의 不條理的인 弊習인 健訟의 惡習과 雜技의 弊端은 오늘의 濟州社會에도 뿌리 깊게 殘存해 있는 弊端으로 指摘할 수 있음으로써, 現代의 濟州社會의 不條理를 分析하고 이의 是正策을 세우는데도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이 「訓民篇」의 研究의 價値는 現代의 濟州道의 行政을 爲해서도 貴한 資料가 될 것이라는 點이다.

우리는 이 「訓民篇」의 研究에서, 島民을 괴롭힘으로써 島民에게 杖殺된 奸吏, 島民에게 逐出된 牧使가 있었는가 하면, 天災를 만난 島民의 苦痛을 스스로의 苦痛으로 받아들이고, 罹災 現場을 巡察하는 자리에서 罹災民의 손을 잡고 같이 痛哭하였을 뿐 아니라 힘을 다하여 罹災民을 救恤해냈던 한 牧民官이 곧 「訓民篇」이 著者인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가 濟州島를 떠날 때는 島民들은 父母를 離別하듯 그의 떠나는 길을 막고 哀惜히 여겼다고 地誌에도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著者が 濟州島를 떠난 直後에 일어난 「丙寅洋擾」에는 先鋒으로 出征하여 洋賊을 痛快하게 芻蕘했던 것이니, 愛民과 忠國의 길은 하나인 것이요, 「訓民篇」의 著者 梁 憲洙의 그 精神은 오늘의 行政家들에게도 教訓이 될 것이다.

그리고, 著者が, 島民에게는 衣食보다도 倫理性 道德性을 먼저 내세우고, 官吏들에게는 政令보다도 教化를 먼저 하라고 強調하면서 「訓民篇」을 만들어 實踐하도록 한 것은 行政家로서의 슬기와 바탕과 그리고 넓은 眼目을 말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거기에서 오랜 積弊와 陋習을 指摘, 그 一掃方案과 對策까지 마련 實踐하고 實績을 올림으로써 歷代 牧使中 島民에 依하여 그 除弊碑가 세워진 唯一한 牧使가 「訓民篇」의 著者임을 생각할 때, 梁 憲洙는 110年前에 이미 오늘의 「新生活運動」乃至는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行政家임을 알수있었으

니 이 「訓民篇」은 行政 乃至는 行政學的으로도 貴한 資料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

以上과 같은 「訓民篇」을 中心으로한 研究分析과 綜合된 結果는 濟州島史에 있어서의 어느 한 時期의 文化的 社會的 한 斷面을 밝혀주는 史的 資料도 될 것임은 勿論이다.

— Summary —

A study of the Book 'Hun Min Pyeon,

by Yang Joong-hae

It is recorded in the Tamna Kinyeon, public documents about the compilation of the Cheju-do histories, that Yang Huhn-soo, the then Governor of Cheju, wrote a book titled Hun Min Pyeon (the Book for Enlightenment) in the first year of King Ko Jong (1884) of the Yi Dynasty to instruct and enlighten the people of Cheju-do.

The writer had looked for the book for many years and finally discovered a copy of the book in 1965.

This study has tried to show, first, how the writer came to discover the book and then to discuss the format of the book and the writer's findings about the author as well as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Though the analytic study of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writer has confirmed its great value for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and believes that these data in the book, if properly synthesized,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 the exploration and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Cheju-do.

Hun Min Pyeon was written by the then Governor of Cheju to enlighten the people of Cheju-do. Therefore its contents were of educational nature to encourage good morals and manners and to remove bad habits.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e islanders' indiscriminate lawsuits and gambling from the long evil customs in the community of Cheju-do. This must be recognized as the valuable material in that it contains the concrete plans and suggestions to control and root them out.

These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Hun Min Pyeon written by Governor of Cheju, Yang Huhn-soo, 110 years ago, were successfully pushed forward. In a sense, they can be compared to the new life movement of today and the Saemaul Undong.